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6~23
----------	---------

제출연월일	2006. 4. 1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안 제5조).
- 다.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검토
- 라.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및 해촉 조치를 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 ▶ 표준안 : 도 복구지원과-3798(2005. 10. 16)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입법예고(2006. 2. 24~ 3. 16)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